



진안군

군보는 공문으로써의 효력을 갖는다.

# 군 보

제491호 2016. 4. 15(금)

선	기 관 의 장
람	

## 조례

- 진안군 조례 제2215호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규칙

- 진안군 규칙 제1154호 (진안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 5
- 진안군 규칙 제1155호 (진안군 공무국외여행 규칙) ..... 10

## 훈령

- 진안군 훈령 제385호 (진안군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규정) ..... 22
- 진안군 훈령 제386호 (진안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규정 전부개정규정) ..... 23

## 고시

- 진안군 고시 제2016-24호 (지적기준점고시문[진안군0412]) ..... 34

회										
---	--	--	--	--	--	--	--	--	--	--

발행 진안군 (편집 행정지원과)(063)430-2838

진안군의회 의결을 얻은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진안군수 0/563 

2016 4월 15일

진안군 조례 제2215호

###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 제목 "(지원)"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을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로 한다.

현행 제3조제2호를 같은 조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업무

현행 제3조제3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  
제3조제4호 및 제5호는 각각 삭제한다.

현행 제3조제6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별표 1의 사업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방법  
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다.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사업) ---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
1. (생략) <u>&lt;신설&gt;</u>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업무
3.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사회복지관련 기관, 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등	4.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 실무를 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 <u>&lt;삭재&gt;</u>
5.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과의 연계 협력사업	<u>&lt;삭재&gt;</u>
6. 그 밖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별표 1의 사업
제4조(보조금 등) 군수는 제3조의 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 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방법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별표 1]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1. 좋은 이웃들 추진사업	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2. 사회복지의 날 한마음 대회	사회복지의 날 맞이 기념식 및 저소득층 초정행사	
3. 읍면지회 활성화사업	위기가정 파악 및 지원	
4. 보청 전화기 지원 사업	저소득 난청어르신 보청 전화기 공급	
5. 소외노인 팔순잔치	저소득 팔순노인 팔순잔치 개최	
6. 복지넷 지원 사업	진안군 복지발전 모색 토론회 및 워크숍	
7.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현장학습 등 지원사업	
8. 연탄 지원 사업	저소득층 연탄 공급	
9. 거동불편자 용품 지원사업	저소득층 외상 및 거동불편자 보행보조기, 이동변기 등	
10.복지대학 운영	사회복지 전문지식 교육	
11. 순간온수기 지원 사업	저소득층 순간온수기 지원사업	
12. 소외계층 지원 및 의식주 보급사업	소외계층의 사회복지 지원 및 의식주 보급사업	
13. 민간자원과의 연계·협력 및 복지기관 공모사업	민간자원과의 원활한 협력 및 협조를 위한 사업과 복지기관 공모사업	

진안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진안군수 0/863



2016년 4월 15일

진안군 규칙 제1154호

### 진안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진안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진안군 소속 공무원과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파견된 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용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5. 학연, 지연, 종교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6. 최근 2년 이내에 인가·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 및 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그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받은 자로서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제11조 중 “진안군의”를 “군의”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공무원”을 “공무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으로 한다.

제3장에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협찬을 요구하는 행위의 금지) ①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② 공무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3(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 “사적인 접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것
2. 직무관련자와 함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제1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회의 등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이 외부강의·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금품 등을”을 “금품 등을 받거나 제17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하여”를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홈페이지 공고 등의 의결차(군수가 정하는 절차)를 거쳐”를 “14일 이상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직속기관·읍·면”을 “직속기관·사업소·읍·면”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받은 자로서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u>
4. (생 략)	7.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u>진안군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u>	제1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 ----- <u>군의</u> ----- ----- ----- -----.
제16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u>공무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u>	제16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u>공무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u>  ----- -----, - ----- -----.
<신 설>	제16조의2(협찬을 요구하는 행위의 금지) ①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② 공무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

현 행	개 정 안
	<p><u>동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u>제16조의3(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 "사적인 접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것</u></li> <li><u>2. 직무관련자와 함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u></li> </ol>
제17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생 략)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 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p>제17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u>다만, 직무관련 강의·회의 등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u></p> <p>③ 공무원이 외부강의·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 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p>
제23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제23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현 행	개 정 안
① 제15조 또는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u>급품 등을</u>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급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u>의하여</u> 그 반환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① ----- ----- <u>급품 등을</u> 받거나 <u>제17조 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u> <u>여 대가를</u> ----- ----- ---. ----- <u>따라 증빙자료를</u> <u>첨부하여</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인도된 급품 등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급품 등에 대하여는 <u>홈페이지</u> <u>공고</u> 등의 절차(군수가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군 금고에 귀속 한다.	3. ----- ----- <u>14일 이</u> <u>상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u> <u>를 거친 후</u>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등) ① 군 감사담당부서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고, 본청과 <u>직속기관</u> · 읍 · 면을 관할하도록 한다.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등) ① ----- ----- - <u>직속기관</u> · <u>사업소</u> · 읍 · 면--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lt;신 설&gt;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7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최초 1시간 (상한액)	230	120	<u>원고료 포함</u>
1시간 초과	120	100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부터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위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진안군 공무국외 여행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진안군수

0/ 563



2016년 4월 15일

진안군 규칙 제1155호

### 진안군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진안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의 수행과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자가 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의 경우에만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 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 운영계획
4. 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공무국외여행담당 부서의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하되, 공무국외여행자 본인과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 1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④ 공무국외여행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여행대상자는 여행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여행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여행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의 경력,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여행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제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행정자치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게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 등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허가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lt; 별표 1 &gt;

##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 1. 여행의 필요성

- 공무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은 자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여행을 우선  
※ 해외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 단순목적의 국외여행 억제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하고 여행 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 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여행의 필요성·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

### 3. 여행자의 적합성

- 여행자의 담당업무와 여행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여행인원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자간의 명확한 업무분장
-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비춰 여행자 선정의 적합 여부
  -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 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여행은 금지됨
- 연수 기회의 제공에 있어서 성별 형평성을 고려함

####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을 감안, 적절한 시기를 선택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피하도록 함

#### 5. 여행경비의 적정성

- 여비조례에 의한 여행경비 산출·지급 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여행 시 산하기관에 비용 전가 금지  
※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
- 현지활동 중 교통 수단(항공, 철도, 승용차, 버스 등) 확보 여부
- 공무국외여행 중 비상연락체계 수립 여부

&lt; 별지 제1호 서식 &gt;

공무국외여행계획서

##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기간	20 . . . ~ 20 . . . ( 일간)							
여행국								
방문기관								
여행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개							

### 2. 여행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 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3. 여행경비

성 명	계	항 운 공 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 4. 여행효과

&lt; 별지 제2호 서식 &gt;

###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 I.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여행자 인적사항

#### II.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 III.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IV. 첨부자료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제491호

진안군보

2016. 4. 15(금)

< 벨지 제3호 서식 >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대장

\* 여행 목적란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제491호

진안군보

2016. 4. 15(금)

진안군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진안군수 0/363

2016년 4월 15일

진안군 훈령 제385호

진안군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규정

진안군 공무국외여행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진안군수 2/23

2016년 4월 15일

진안군 훈령 제386호

### 진안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진안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진안군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안군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제4조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진안군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  
외여행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농업관  
련업무 담당부서장, 관광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각 위원이

본인 또는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에 대한 국외공무여행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한다.

제3조(기능 및 심사기준) 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하여 「진안군 공무국외여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적정여부를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여행자의 적합성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타당성
5. 여행경비의 적정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의 적정성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외여행 업무담당이 된다.

제6조(허가신청) 공무국외여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규칙 제4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계획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무국외여행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3. 해외여행자수칙(별지 제3호 서식)
4. 보안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제7조(심사안건의 제출) 간사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첨부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심사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 등) ① 위원장은 심사안건의 제출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은 제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심사안건 공무국외여행의 적정여부를 심의·의결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제출) 위원장은 공무국외여행신청자 등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국 외 여 행 허 가 신 청 서

여 행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급	
	여권번호					
	분 직					
	주 소					
	학 력					
여행기간						
여 행 국						
여행목적						
여권소지 여 부						
여행경력 최근 3년	목 적					
	여 행 국					
	여행기간					

위와 같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 :

성명 : (인)

진안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이 력 서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 경 력

기 간	근 무 경 력

## 최근 3년 간 국외여행 경력

기 간	여 행 목 적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해 외 여 행 자 수 칙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여행을 바르게 한다.
2. 여행목적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귀국보고서 등 필요한 모든 보고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한다.
3. 여행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여행을 삼가 여행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4. 여행 중의 휴대품은 최소한으로 하고 귀국 시에 사치품 등 분수에 넘치는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5.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식가 미화 100달러 또는 한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자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한다.
6. 명랑한 해외여행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여행 선물도 공여하지 아니한다.

작 :

성명 :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박 일간)  
 국외여행을 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염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인이 취급하는 비밀은 물론 그 밖에 취득한 모든 비밀이 국가 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합니다.
2. 본인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비밀을 염수하고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보안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국외여행 기간 중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일, 국가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해당 법규 및 규정에 따른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가. 「국가보안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일반목적 수행)
- 나.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 찬양 등)
- 다. 「형 법」 제99조(공무상 비밀누설 등)
- 라. 「군 형 법」 제14조(일반이적)
- 마. 「군 형 법」 제47조(명령위반)
- 바. 「군 형 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별지 제5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심사요구서

대 상 조 사 서	대 상 자	
	여 행 기 간	
	여 행 국	
	여 행 목 적	
	여 행 경 비	
	주 관 부 서	
	참 고 사 항	
요 구 자 의 견		

첨부사항 :

위와 같이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요구합니다.

심사요구자 직위 : 담당

성명 : (인)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심사의결서

심 사 대 상 적 요	대 상 자			
	여 행 기 간			
	이 행 국			
	여 행 목 적			
	여 행 경 비			
	주 관 부 서			
적 정 여 부 판 단	위 원 장			
	부 위 원 장			

※ 위원회 위원은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기간 및 시기의 타당성 여행 목적지의 타당성, 여행목적의 필요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위 원 장	부 군 수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7호 서식)

(앞 면)

공무국외여행 시면심사 의결서

심 사 대 상 자 적 요	연 수 개 요					담당자 의 견
	대 상 자	~ ( 일)	~ ( 일)	~ ( 일)	~ ( 일)	
여 행 기 간						
여 행 국						
여 행 목 적						
주관 및 경비부담						
여 행 경 비						
최근 3년 이내 여 행 여 부						

\* 실무진 종합의견 : ○○○ 위 ○○명의 국외공무여행을 허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적 정 여 부 판 단	심 사 자	검 토 의 견				서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뒷 면)

공무국외여행허가신청 검토의견서

검토개요

검토결과

종합의견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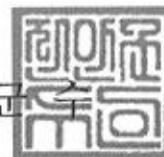


【진안군 고시 제 2016 - 24호】

지적기준점성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04월 15일

진안군



측량기준점 명칭 및 번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고 (m)	경위도	
	X(m)	Y(m)		경도 (L)	위도 (B)
지적도근점 388와 101점	불	임		참	조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소재지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 309-11 외				
설치일자	2016년 03월 07일				
표지의제질	철제				
측량성과보관장소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비고	설치(붙임조서참조)				

## 지적측량기준점성과조사서

번호	기준점의 명칭	번호	지역축지점(m)		세계축지점(m)		위도 (도·분·초)	경도 (도·분·초)	설치일자	소재지	표지판	비고
			통선좌표(X)	통선좌표(Y)	통신좌표(X)	통신좌표(Y)						
1	지적도근점	388	243367.80	235048.50	343675.330	235121.300	314.122	35-41-22.62744	2016.03.07	진안군 백운면 대현리 309-11	철제	설정 및 보관장소 진안군청 민원과 물류 부서
2	지적도근점	390	243155.19	234963.26	343462.710	235036.060	314.785	35-41-15.74005	2016.03.07	진안군 백운면 대현리 903	철제	제설치
3	지적도근점	391	243021.90	234862.83	343329.420	234935.630	316.592	35-41-11.42620	2016.03.07	진안군 백운면 대현리 453	철제	제설치
4	지적도근점	393	243377.79	234895.95	343685.310	234968.750	314.405	35-41-22.97092	2016.03.07	진안군 백운면 대현리 336-1	철제	제설치
5	지적도근점	394	243581.43	234873.12	343888.950	234945.920	311.835	35-41-29.58086	2016.03.07	진안군 백운면 대현리 881	철제	제설치
6	지적도근점	405	247152.26	233295.57	347459.740	233368.330	278.837	35-43-25.63315	2016.03.07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1598	철제	제설치
7	지적도근점	438	247878.90	231970.79	348186.360	232043.550	280.916	35-43-43.36666	2016.03.07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1483-1	철제	제설치
8	지적도근점	441	247077.83	233213.37	347385.310	233286.110	279.045	35-43-23.22821	2016.03.07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1597	철제	제설치
9	지적도근점	444	247067.44	233439.12	347374.920	233511.880	278.766	35-43-22.86356	2016.03.07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1608	철제	제설치
10	지적도근점	582	244860.30	235698.12	345167.830	235770.890	306.530	35-42-10.96798	2016.03.07	진안군 백운면 운고리 2251	철제	제설치
11	지적도근점	583	244628.98	235953.28	344936.500	236026.060	321.536	35-42-03.42918	2016.03.07	진안군 백운면 운고리 1265	철제	제설치
12	지적도근점	586	244256.09	235602.32	344563.610	235675.110	310.301	35-41-51.37556	2016.03.07	진안군 백운면 운고리 1309	철제	제설치
13	지적도근점	587	244254.43	235718.12	344561.960	235790.900	314.297	35-41-51.30777	2016.03.07	진안군 백운면 운고리 1465	철제	제설치
14	지적도근점	777	251264.26	230672.69	351571.680	230745.410	280.857	35-45-39.15318	2016.03.07	진안군 마령면 낙현리 1624	철제	제설치

번호	기준점의 명칭	번호	지역축자체(m)		세계축자체(m)		위도 (도·분·초)	경도 (도·분·초)	설치일자	소재지	표지제작	비고
			동전좌표(X)	동전좌표(Y)	동전좌표(X)	동전좌표(Y)						
15	지적도근점	778	251149.76	230833.46	351457.180	230906.190	278.342	35-45-35.62010	2016-03-07	진안군 마령면 악전리 1754	설치	제설치
16	지적도근점	950	263590.75	239087.21	363898.200	239159.730	269.007	35-52-18.20446	2016-03-07	진안군 정천면 풍락리 395.8	설치	제설치
17	지적도근점	1213	266375.01	239732.89	365682.450	239805.370	299.543	35-53-48.44330	2016-03-07	진안군 정천면 갈율리 1476.2	설치	제설치
18	지적도근점	1214	266268.51	239802.99	366575.950	239875.470	296.883	35-53-44.97764	2016-03-07	진안군 정천면 갈율리 1477.2	설치	제설치
19	지적도근점	1215	266143.90	239867.18	366451.350	239939.660	299.226	35-53-40.92562	2016-03-07	진안군 정천면 갈율리 1487.4	설치	제설치
20	지적도근점	1219	265501.16	239759.68	365808.610	239832.170	301.927	35-53-20.08847	2016-03-07	진안군 정천면 갈율리 1497.2	설치	제설치
21	지적도근점	1367	246846.63	233632.09	347154.120	233704.860	283.476	35-43-15.67581	2016-03-07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463-2	설치	제설치
22	지적도근점	1368	246932.31	233482.77	347239.790	233555.530	280.899	35-43-18.47383	2016-03-07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541-1	설치	제설치
23	지적도근점	1369	246960.18	233353.47	347267.660	233426.240	283.366	35-43-19.39405	2016-03-07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511	설치	제설치
24	지적도근점	1622	264209.47	237567.06	364516.900	237639.580	290.947	35-52-36.49213	2016-03-07	진안군 정천면 풍락리 1225	설치	제설치
25	지적도근점	1623	264035.20	237419.07	364342.930	237491.600	308.996	35-52-32.88582	2016-03-07	진안군 정천면 풍락리 765	설치	제설치
26	지적도근점	1624	264196.62	237307.45	364504.050	237379.970	296.518	35-52-38.11104	2016-03-07	진안군 정천면 풍락리 781-1	설치	제설치
27	지적도근점	1627	263990.38	237382.82	364297.800	237455.340	311.184	35-52-31.40925	2016-03-07	진안군 정천면 풍락리 742	설치	제설치
28	지적도근점	1862	249300.14	231691.40	349607.590	231764.150	264.899	35-44-35.51146	2016-03-07	진안군 마령면 갈월리 448-2	설치	제설치
29	지적도근점	1863	249494.07	231758.01	349801.520	231830.750	263.928	35-44-41.79568	2016-03-07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432-1	설치	제설치

번호	기준점의 명칭	번호	지역축자위(m)	세계축자위(m)	표고 (m)	위도 (도·분·초)	경도 (도·분·초)	설치일자	소재지	표지판설 비고	측정성과 표준점수	
30	지적도근점	1916	267347.73	239469.39	367655.160	239541.860	324.950	35°54'20.04038	127°16'49.2003	2016.03.07. 진안군 정면면 갈율리 1371	설치	제설치
31	지적도근점	2195	240449.67	229909.43	340757.150	229982.300	264.883	35°39'48.55588	127°19'52.06867	2016.03.07. 진안군 성수면 구신리 13104	설치	제설치
32	지적도근점	2196	240483.55	229963.20	340791.030	230036.060	264.954	35°39'49.64937	127°19'54.21092	2016.03.07. 진안군 성수면 구신리 1370-1	설치	제설치
33	지적도근점	2303	245281.43	239180.44	349588.970	239253.140	350.301	35°44'33.93491	127°26'02.21243	2016.03.07. 진안군 진안읍 가원리 1873-1	설치	제설치
34	지적도근점	2305	249434.40	239073.04	349741.940	239145.740	346.166	35°44'38.91322	127°25'57.96517	2016.03.07. 진안군 진안읍 가원리 1870-1	설치	제설치
35	지적도근점	2306	249543.86	238975.71	349851.400	239048.410	343.119	35°44'42.47665	127°25'54.11071	2016.03.07. 진안군 진안읍 가원리 794-18	설치	제설치
36	지적도근점	2477	260721.29	243641.82	361028.820	243714.350	278.493	35°50'44.41682	127°29'02.00955	2016.03.07. 진안군 성천면 수동리 898-9	설치	제설치
37	지적도근점	2478	260878.73	243584.65	361186.260	243657.170	278.662	35°50'49.53388	127°28'59.75772	2016.03.07. 진안군 성천면 수동리 862	설치	제설치
38	지적도근점	2556	270822.21	246351.08	371129.700	246423.470	273.882	35°56'11.67865	127°30'52.02776	2016.03.07.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201-4	설치	제설치
39	지적도근점	2557	270867.64	246458.20	371175.140	246530.580	276.300	35°56'13.13441	127°30'56.36072	2016.03.07.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201-6	설치	제설치
40	지적도근점	2558	270951.33	246519.65	371258.830	246592.030	279.095	35°56'15.83913	127°30'58'82957	2016.03.07.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829-10	설치	제설치
41	지적도근점	2559	271066.12	246534.16	371373.620	246606.540	286.949	35°56'19.56073	127°30'59.43261	2016.03.07.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222	설치	제설치
42	지적도근점	2595	262472.31	239893.13	362779.780	239965.650	268.699	35°51'41.80111	127°26'42.94041	2016.03.07. 진안군 정면면 월계리 589-1	설치	제설치
43	지적도근점	2808	256163.75	229206.31	356471.120	229278.990	328.979	35°48'18.47706	127°19'26.16910	2016.03.07. 진안군 부구면 서동리 1439	설치	제설치
44	지적도근점	2810	256095.09	229367.16	356402.460	229439.830	329.006	35°48'16.23198	127°19'32.56623	2016.03.07. 진안군 부구면 서동리 109	설치	제설치

번호	기준점의 명칭	번호	지역축계계(m) 동반화표(X) 동반화표(Y)	세계축계계(m) 동반화표(X) 동반화표(Y)	표 고 (m)	위 도 (도.분.초) 세 상 점 좌 표	설 치 일 자 (연 월 일)	소 재 지 점 명	표 지 자 리 위 도 (도.분.초)	비 고	측 정 방 법 장 소	
45	지적도근점	2817	255751.15	230113.30	356058.540	230185.970	317.197	35-45-04.99182	127-20-02.23732	2016.03.07.	진안군 뿌구면 세룡리 1467	설치
46	지적도근점	2822	255605.20	230284.23	355912.580	230356.910	318.896	35-45-00.23742	127-20-09.02529	2016.03.07.	진안군 뿌구면 세룡리 187.2	설치
47	지적도근점	2983	250500.27	227531.14	350807.650	227603.900	266.444	35-45-14.89955	127-18-18.74932	2016.03.07.	진안군 성수면 풍길리 888	설치
48	지적도근점	3105	252428.06	234062.83	352735.510	234135.520	289.420	35-45-16.71133	127-42-39.02598	2016.03.07.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796.2	설치
49	지적도근점	3106	252435.96	234210.96	352743.420	234283.650	289.439	35-45-16.94918	127-22-44.92443	2016.03.07.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767.2	설치
50	지적도근점	3668	245732.82	230734.38	346040.280	230807.170	311.135	35-42-39.87838	127-20-25.9250	2016.03.07.	진안군 진안읍 회광리 1059	설치
51	지적도근점	3669	245766.18	230562.04	346073.630	230634.830	312.238	35-42-40.97983	127-20-18.74106	2016.03.07.	진안군 성수면 의금리 1055	설치
52	지적도근점	3671	245962.24	230495.51	346269.700	230568.300	299.714	35-42-47.34871	127-20-16.12120	2016.03.07.	진안군 성수면 의금리 99.2	설치
53	지적도근점	3827	250378.15	239822.02	350685.690	239944.700	363.934	35-45-09.41766	127-26-29.93153	2016.03.07.	진안군 진안읍 밤들리 1722	설치
54	지적도근점	3828	250405.77	239739.53	350713.300	239812.220	359.395	35-45-10.33287	127-26-24.66321	2016.03.07.	진안군 진안읍 밤들리 1712	설치
55	지적도근점	3829	250564.42	239623.21	350874.950	239692.890	357.015	35-45-15.49702	127-26-20.06142	2016.03.07.	진안군 진안읍 밤들리 1283.2	설치
56	지적도근점	3979	261377.50	248709.78	361685.080	248782.250	316.637	35-52-09.73545	127-32-24.53642	2016.03.07.	진안군 안전면 신고리 757.3	설치
57	지적도근점	3980	261324.79	248845.76	361632.360	248918.230	320.931	35-52-08.00073	127-32-29.94501	2016.03.07.	진안군 안전면 신고리 781.3	설치
58	지적도근점	3982	262507.14	249003.29	363814.720	249075.750	305.604	35-52-13.88862	127-32-36.26430	2016.03.07.	진안군 안전면 신고리 782.19	설치
59	지적도근점	4043	250595.28	227595.47	350902.670	227668.230	269.645	35-45-17.97598	127-18-21.32170	2016.03.07.	진안군 성수면 풍길리 52-17	설치

번호	기준점의 명칭	번호	지역축자체(m)		세계축자체(m)		위도 (도·분·초)	경도 (도·분·초)	소재지	표지제작일	비고	측정일자 및 관리 보관소	
			동선좌표(X)	밀선좌표(Y)	동선좌표(Z)	밀선좌표(W)							
60	지적도근점	4044	250496.30	227702.15	350803.690	227774.910	266.423	35-45-14.75369	127-18-25.5557	2016.03.07	천안군 성수면 증길리 57-5	철제	제설지
61	지적도근점	4045	250426.94	227848.62	350734.330	227921.380	264.732	35-45-12.48820	127-18-31.37695	2016.03.07	천안군 성수면 증길리 951-3	철제	제설지
62	지적도근점	4046	250255.37	227831.79	350562.760	227904.550	262.547	35-45-06.92343	127-18-30.68566	2016.03.07	천안군 성수면 증길리 62	철제	제설지
63	지적도근점	4151	269544.24	239259.75	369851.650	239332.190	308.270	35-55-31.33252	127-26-08.94974	2016.03.07	천안군 주천면 윤별리 642-2	철제	제설지
64	지적도근점	4229	247800.06	232571.03	348107.530	232643.790	273.496	35-43-46.73798	127-21-38.95907	2016.03.07	천안군 마량면 계서리 670-2	철제	제설지
65	지적도근점	4324	272283.76	243612.77	372591.210	243685.150	273.067	35-56-59.54951	127-29-03.12456	2016.03.07	천안군 용답면 읍거리 518-43	철제	제설지
66	지적도근점	4429	267140.47	239447.78	367447.900	239520.260	314.926	35-54-13.81920	127-26-16.02164	2016.03.07	천안군 청천면 갈풀리 1457-1	철제	제설지
67	지적도근점	4442	264260.76	237177.50	364568.190	237250.020	298.586	35-52-40.20976	127-24-45.00491	2016.03.07	천안군 청천면 용화리 799-5	철제	제설지
68	지적도근점	4443	264222.48	237453.28	364529.910	237525.800	291.643	35-52-38.92994	127-24-55.99212	2016.03.07	천안군 청천면 용화리 783-2	철제	제설지
69	지적도근점	4507	257342.89	249955.40	357650.510	250027.940	364.076	35-48-53.72538	127-33-12.82864	2016.03.07	천안군 청천면 삼현리 430-1	철제	제설지
70	지적도근점	4508	257377.98	249958.13	357685.600	250030.670	368.614	35-48-54.86333	127-33-12.94559	2016.03.07	천안군 동합면 삼현리 423-2	철제	제설지
71	지적도근점	4756	252037.42	237228.14	352344.920	237300.810	354.062	35-46-03.62466	127-24-44.97635	2016.03.07	천안군 진안면 단암리 683-2	철제	제설지
72	지적도근점	4757	251953.00	237126.84	352260.500	237199.520	353.509	35-46-00.89948	127-24-40.92976	2016.03.07	천안군 진안면 단암리 699-1	철제	제설지
73	지적도근점	1110	272126.32	239655.30	372433.730	239727.700	271.673	35-56-55.04838	127-26-25.19075	2016.03.07	천안군 주천면 운봉리 92-1	철제	제설지
74	지적도근점	1111	272313.29	239852.02	372620.700	239924.430	270.522	35-57-01.08559	127-26-33.07405	2016.03.07	천안군 주천면 운봉리 81-4	철제	제설지

번호	기준점의 명칭	번호	지역축지계(m)		세계축지계(m)		위도 (도-분-초) (도-분-초)	경도 (도-분-초) (도-분-초)	설치일자	소재지	표지제작	비고	
			동전좌표(X)	동전좌표(Y)	종전좌표(X)	종전좌표(Y)							
75	지적도근점	1112	272428.17	239987.69	372735.570	240060.090	269.060	35-57-04.79250	127-26-38.50782	2016.03.07	진안군 주전면 운동리 759-2	철제	제설치
76	지적도근점	1189	272528.10	242622.89	372835.540	242695.270	273.008	35-57-07.62403	127-28-23.67521	2016.03.07	진안군 용당면 육거리 산39-6	철제	제설치
77	지적도근점	1192	272640.17	242968.24	372947.610	243040.620	272.812	35-57-11.21540	127-28-37.47717	2016.03.07	진안군 용당면 육거리 534-3	철제	제설치
78	지적도근점	1193	272580.68	243061.02	372888.130	243133.400	272.199	35-57-09.27074	127-28-41.16766	2016.03.07	진안군 용당면 육거리 533-4	철제	제설치
79	지적도근점	1210	267061.64	239536.32	367369.080	239608.790	311.456	35-54-10.74886	127-26-19.53801	2016.03.07	진안군 정전면 갈율리 1227-1	철제	제설치
80	지적도근점	1211	266846.34	239553.90	367153.780	239626.370	308.163	35-54-03.76112	127-26-20.20663	2016.03.07	진안군 정전면 갈율리 1221-3	철제	제설치
81	지적도근점	1212	266675.48	239644.58	366982.910	239717.060	306.673	35-53-58.20443	127-26-23.78613	2016.03.07	진안군 정전면 갈율리 1213	철제	제설치
82	지적도근점	1815	263703.00	239667.22	364010.460	239739.740	272.843	35-52-21.76246	127-26-24.15681	2016.03.07	진안군 정전면 갈율리 294-2	철제	제설치
83	지적도근점	1816	263740.98	239758.64	364048.430	239831.150	274.028	35-52-22.998128	127-26-27.80784	2016.03.07	진안군 정전면 갈율리 294-9	철제	제설치
84	지적도근점	1907	268743.56	239288.44	369050.970	239360.890	326.812	35-55-05.35229	127-26-09.95190	2016.03.07	진안군 주전면 운동리 820-1	철제	제설치
85	지적도근점	1913	267797.15	239599.19	368104.580	239671.650	344.509	35-54-34.60233	127-26-22.17696	2016.03.07	진안군 정전면 갈율리 1288-3	철제	제설치
86	지적도근점	1914	267610.79	239491.27	367918.220	239563.740	337.564	35-54-28.57184	127-26-17.83983	2016.03.07	진안군 정전면 갈율리 1350-1	철제	제설치
87	지적도근점	1915	267468.90	239497.67	367776.330	239570.140	333.313	35-54-23.96755	127-26-18.06970	2016.03.07	진안군 정전면 갈율리 1364-4	철제	제설치
88	지적도근점	2281	272686.82	240317.68	372994.240	240390.070	270.383	35-57-13.13557	127-26-51.72212	2016.03.07	진안군 용암면 마을리 747-5	철제	제설치
89	지적도근점	2444	272288.66	243512.01	372596.110	243584.390	272.234	35-56-59.72467	127-26-59.10543	2016.03.07	진안군 용암면 육거리 518-51	철제	제설치

번호	기준점의 명칭	번호	지역주체(m)		세계주지계(m)		위 고 (m)	경 도 (도·분·초)	설 치 일자	소 개 시	표 지 재 설	비 고	주 방 법 보 관 장 소
			용 인 회 포 (X)	용 인 회 포 (Y)	용 인 회 포 (Z)	용 인 회 포 (Y)							
90	지적도근점	2445	272341.41	243310.55	372648.860	243362.930	270.974	35-57-01.46845	2016.03.07.	진안군 용달면 육거리 산64-14	설재	제설치	
91	지적도근점	2446	272365.54	243219.28	372672.990	243291.660	270.608	35-57-02.26574	2016.03.07.	진안군 용달면 육거리 산64-9	설재	제설치	
92	지적도근점	2447	272412.28	243136.34	372719.730	243208.720	270.742	35-57-03.79534	2016.03.07.	진안군 용달면 육거리 527-1	설재	제설치	
93	지적도근점	2594	262242.66	239883.31	362550.130	239955.840	269.836	35-51-34.15193	2016.03.07.	진안군 평현면 월동리 906-5	설재	제설치	
94	지적도근점	2599	263178.24	239856.67	363485.700	239929.190	270.002	35-52-04.70961	2016.03.07.	진안군 청천면 봉화리 185-1	설재	제설치	
95	지적도근점	2600	263225.98	239812.08	363533.440	239884.600	267.477	35-52-06.26498	2016.03.07.	진안군 청현면 봉학리 185-2	설재	제설치	
96	지적도근점	2601	263251.33	239761.98	363558.790	239834.500	267.600	35-52-07.69485	2016.03.07.	진안군 청현면 봉악리 116-5	설재	제설치	
97	지적도근점	2602	263338.44	239479.17	363645.900	239551.690	268.481	35-52-09.36208	2016.03.07.	진안군 청현면 봉평리 464-2	설재	제설치	
98	지적도근점	2648	260768.69	240175.48	361076.170	240248.030	273.524	35-50-46.48737	2016.03.07.	진안군 청현면 봉평리 309-3	설재	제설치	
99	지적도근점	2955	259559.51	240282.10	359887.000	240354.670	332.082	35-51-07.24078	2016.03.07.	진안군 청현면 월령리 208	설재	제설치	
100	지적도근점	2962	258550.63	240363.86	358858.130	240436.440	315.000	35-49-14.49658	2016.03.07.	진안군 진안면 운산리 709	설재	제설치	
101	지적도근점	2966	258013.40	240419.50	358320.900	240492.080	287.721	35-49-17.05815	2016.03.07.	진안군 진안면 운산리 756-4	설재	제설치	
102	지적도근점	3288	257373.13	239818.13	357680.630	239890.720	314.759	35-49-56.37369	2016.03.07.	진안군 진안면 운산리 1281-4	설재	제설치	
										여	여	여	